영농도우미 지원

세부사업명	취약농가 인력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7,840							7,840		
사업목적	○ 사고·질병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침	촌 및 식	품산업 기	본법 제393	5제3	항				
지원자격 및 요건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 등								
지원한도	○ 1가구당 국고지원한도 : 49,000원/일									
재원구성 (%)	국고	70%	70% 지방비 융자 자부					-담	3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19년		2020	년	
연도별 재정투입	합계 10,200 10,360 11,900 11,2							11,20	00	
현황	국고	7	,140	7,252 8		.330		7,840		
	자부담	자부담 3,060 3,108 3,570 3,360							0	
담!	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승규		04	044-201-1574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과 장 이 구 임 왕			유경 02-2080-541		-5412		
신청시기	연중	,		사업시행				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I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표 주요내용

1. 사업 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m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③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 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등
 - ※ (공통)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및 조건

- 국고 70%(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7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
- *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 (10일 이상) 10일 지원. (1~9일)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영농도우미 임금이 7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9,000원만 지원 (차액 자부담), 70,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의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 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워기간

구 분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상해진단시	진단기간 내	10일 이내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1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30일 이내	10일 이내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이내	교육참여 일수

- * 다만, 신청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진단·입원·치료기간보다 경과한 경우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하여 지원 가능
-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겨할 수 없음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4.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 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
 - *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 선정
 - · 신청농가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농도우미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함 (단.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략가능)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 (예) 사업연도 '20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0.12.31.이하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 *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도우미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 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 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 《제재》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 영늘	두 두 우 [기 시	청 구비서	│ │류 ○O동	엽소학	압상 🧵	1 하			
			_				a .=1			
			_	~ - 청대리인		성명		(인/서		
			신	청인	,	성명		(인/서	명)	
7/	씩 전다	1 안내	눈에 반하		설명 년	_	고 두 일	령하였습니	나.	
							.,]·이용·제공 ㅁ	Y에 관한 │ │
		, _		의 개인정의	•					
•		•	·]용에 동의합	남니다.
							-	서디아는 동의합니다	것에 동의 가.	됩니다.
- '	•								사업신청과	
	기와 같	이 영	농·행복나	눔이를 신]청합	니다.				
추천시 신청인 기재)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내 역 (본인	성 	명						생년월일		
기재사항 도우미	ᅿ	пэ						개기하이		
신청인	│ 신정일수 │							희망시기		
행복 나눔이	신청	사유						스바상(현		
	신청	일수						희망시기		
기재사항	작업	종류						작업장소		
도우미 신청인	신청	사유								
영농	교육침	남석일						교육내용	[] 교육
	발생	[일/						내용/	기타사고,	질병
	사고・	질병						사고질병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주	소						핸드폰		
신청인								전화번호		
	성	명						주민번호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영농도우미 수혜자용)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의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1 1 1 0 9 9	002117711 91071 71111 22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지현황, 영농도우미 지원실적							
수집·이용할 항목	○ 기타 영농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샤티쟈 코니]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							
	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및 부동의시 불이익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여부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대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하거나 공공기관, 농협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할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기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성명						생년	월일			
(도우미)	Ŧ	스소						전화	번호			
농업	く	성명						생년	월일			
경영체 (수혜자)	F	스소						전화	번호			
(- - /					영분	 동도우미	활-	 동사 ^ㅎ	 항			
영농일지	\	 농ス	· 소기	애기	재	배작목	작약	십내용] 량/작	업시간	수혜자 확인 (인/서명)
												(6/ 10/
※ 일별 영	농드	E 우미	활동		해 성	상세 <i>하</i> 게	작성					
	금			원								
임금청구				: 1일	임금	(원)		1 - 7			
		금은형						α	ll 금주			
	격]좌번	호									
상기와 건 수령금 변									귀용ㅇ	사실	과 다들	를 경우에는
				2	20	년	월		일			
				청	구인	상	!	명	:			(인/서명)
				(, _				장 귀	하		(<u> </u>
상기와 같	·0]	 영놋1	 근 우	미 화	 동해.	 음윽 화ㅇ] 항 l	 니다				
확인자 :					J , , ,	µ E 7 l	성명				((인/서명)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영농도우미 □, 행복나눔이 □)를 파견합니다.

지원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성 명 (마을명) 생년월일 (마을번호)
(경로당)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 <예시7> 결혼이민여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인 파견 <예시8> 파종, 전지, 수확시기 등으로 작업량 과다
확 인 자	20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농협·이장·경로당 관리 책임자 중 1인)
	(이 비 기 이 기 이 된 네 주 급기 이 보고)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다수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협에서 보관